

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제정(2013.12.12.)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임용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경제부지사 자격기준 중 근무상한연령 삭제 (안 제2조)
 - 부적격자 기준 중 「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‘근무상한연령 초과자’ 삭제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제정된 대통령령인

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에 정무부지사는 근무상한 연령을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단서조항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임용 자격기준 중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